

2014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꿈·차량의·감동이 있는
정기를
학교

군산 **대성** 중학교
GUNSAN DAESEONG MIDDLE SCHOOL

군산대성중학교 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군산대성중학교” 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 【구성】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교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무부장을 부회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

③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제5조 【교원의 의무】 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생활지도협의회는 재적의원 1/20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생활지도협의회의】 생활지도협의회의는 직원조회 시 병행하며,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협의회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선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무부장, 인성인권부장, 해당 학급담임,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고, 인성인권부장을 주무로 한다.

③생활선도협의회는 생활지도협의회장의 허가를 받아 교무부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④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생활 중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을 심의하고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사회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에 해당되는 사안은 인성인권부교사와 해당 학생의 담임만의 생활선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 밖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감(교무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①학교의 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로 학생생활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선임한다.

제13조 【학교폭력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전학 권고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

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한다.

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0조 【기본생활】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육자의 의견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교육활동의 자유】

①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교육 활동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교는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

제23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5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6조 【학교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2. 담임교사의 핸드폰이나 E-mail

3. 인성인권부장의 핸드폰이나 E-mail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④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학교장이 지정하는 치료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①남녀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③상대방의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

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②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③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제29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특별실 담당 학생을 지정하여 관리 및 청소를 한다.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0조 【용의사항】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두발

1. 두발의 길이는 자율로 하되 학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모양으로 한다. 다만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생활지도협의회 권고에 따른다.

2.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사용은 허용한다. 단,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액세서리 착용

1. 목걸이, 반지의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2. 피어싱은 금지한다.

③화장, 손톱

1. 햇빛 차단용 화장(선크림)은 허용한다.

2. 색조 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손톱의 매니큐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④복장은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동·하, 춘추복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일기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복 : 11월 1일 ~ 3월 31일
2. 하복 : 6월 1일 ~ 9월 30일
3. 춘·추복 : 4월 1일 ~ 5월 31일, 10월 1일 ~ 10월 31일
4. 교복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5.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6.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생활복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⑤신발, 가방

1.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화는 실내용 운동화나 슬리퍼를 착용한다.
2.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제31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도우미)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4.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5.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6.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실장을 제외한(삭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1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 단, 봉사활동(도우미)학생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32조 【기타 교내생활】 학생들이 교내활동을 할 때(삽입)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인권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3조 【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부재 시 부담임) 또는 교과 담당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34조 【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35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 등을 이용하지 않고 신체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6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7조 【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38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는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는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한 통화의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고 사용한다.
2. 담임교사가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교육공동체 합의하에 할 수 있다.
3. 교육시간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로 교육활동 방해시 담임(해당교사)이 수거하여 1주일(일정한 범위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담임이 보관한 후 학생에게 되돌려준다.
4. 교사기간에는 휴대폰을 원칙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교사 실시 전에 담임에게 보관 후 종례시에 찾아가야 한다.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6. 교내 각종 정보 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39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0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1조 【효력정지】 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42조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기타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건의사항 등)
4. 학교운영위에 상정할 학생 인권·복지·생활에 관한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총회의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3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한다.

제44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명, 2학년 1명)
2. 각부의 부장 1인

제45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학습부 : 학생회 행사 업무 추진, 각종 회의 기록, 각종 성금 취합, 선거사무, 면학분위기 조성, 실내정숙, 학력향상, 자기주도 학습 진행, 예능발표회 등에 관한 사항
2. 봉사·미화부 : 실내외의 청결, 환경 정화 활동, 자원 재활용, 게시 환경 조성, 이웃돕기, 자율 봉사 활동, 위문활동, 급식도우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부 : 기본생활습관 형성, 교칙 준수, 용의 복장 지도, 명상의 시간운영, 선행 사례 발굴, 체육 행사, 질서 계도 활동, 친선 오락 활동, 보건 위생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 【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장, 부회장, 각 부장을 선출한다.

1.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 1)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2) 총유권자의 2/3 이상이 참가하여 최다 득점자를 회장 당선자로 하고, 차점자를 3학년 부회장으로 한다.
 - 3) 회장,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은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총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7조 【임원의 자격요건】 본교 재학생은 임원이 될 수 있다.(단 징계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 【정·부회장 입후보】

- ① 정·부회장에 입후보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류의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 시에는 등록이 무효화된다.
- ④ 등록 후 입후보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포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4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당해년 3월중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정·부회장 선거일정을 결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일 공고 후 부정사례가 없도록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50조 【정·부회장 선거】

- ① 선거일은 공고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로 한다.
- ② 투표방법 : 소정의 투표용지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2,3학년)을 기명 후 투표함에 넣는다.
- ③ 투표가 끝나면 총 투표자수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다음, 개표종사원에 의하여 개표한다.
- ④ 개표가 끝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결과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정, 부회장 임후보자는 등록을 필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기를 홍보할 수 있다.

제51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3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2조 【집행위원회】 ①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제53조 【예산편성 요구】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생활지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4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생활지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회계년도】 학생회장 임기에 준한다.

제56조 【자문】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학생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57조 【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0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0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지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8조 【학생회 의결사항】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생활지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지도 및 상·벌제(그린마일리지)

제1절 생활지도

제59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방학 전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6.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60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로 체험 활동과 진로 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4. 올바른 상급 학교 학교선택을 위한 탐색기회를 제공한다.
5.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6. 학급 담임 교사는 학생 특성에 맞는 개별 진로지도를 실시한다.

제61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62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63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2절 표 창

제64조 【종류】 본교 학생에게 다음의 각 호의 시상을 학생표창규정에 의거하여 수여한다.(세부사항은 학생표창규정에 의함).

제65조 【시기】 표창은 수시 또는 학년말에 행한다.

제66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5장 징 계

제67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 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68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 사안은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징계 시에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69조 【징계의 심의 및 의결】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따른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 참조)

제70조 【생활선도협의회 소집】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71조 【생활선도협의회 사안설명】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2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징계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계, 훈육
2. 교내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5. 가정학습(출석정지)

제74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기간은 학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 봉사 : 3~10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등교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5. 출석정지기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5조 【징계의 방법】 징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인성인권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시·도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4.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5. 제73조 제2항~제4항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추수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6. 제73조 제2항과 제3항의 ‘학교 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6조 【징계의 세부사항】 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훈계(1단계)

1. 담임교사 지도하에 ‘자성의 기회’ 부여
2. 교내외 봉사활동

②학교 내의 봉사(2단계)

1. 학교환경 미화작업 및 개선 작업
2. 교원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5. 기타 학생 선도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③사회봉사(3단계)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④특별교육 이수(4단계)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Wee센터,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출석정지(5단계)

1. 1회는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 한다.

⑥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77조 【심의 확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지도협의회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78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9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0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위원회는 징계 완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81조 【추수지도】 인성인권부장 또는 해당 학생 상담교사는 징계 학생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누가 기록을 작성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4회 이상
2. 사회봉사 : 6회 이상

3. 특별교육 이수 : 10회 이상

제82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6장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83조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 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개정안의 발의 및 개정방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록]

상점 기준

구분	항목	선행 내용	상점	비고
환경미화 및 봉사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2	청소 및 봉사활동을 잘함	2	
	3	학급 행사활동에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함	2	
	4	교내 낙서 지우기	2	
고발 및 신고활동	5	습득물 신고(열쇠, 안경, 책가방, 교복 등)	3	
	6	습득물 신고(현금 5만원 이상, 귀중품)	3	
	7	비품, 공공기물의 행위 신고	1	
	8	학생 관련 사건 및 사고의 신고	1	
수상 및 명예선양	9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	2	
	10	시 대회 입상(개인)	3	
	11	도 대회 입상(개인)	5	
	12	전국대회 입상(개인)	8	
선행 및 모범학생	13	선행, 효행 표창 등 학교의 명예 선양	4	
	14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3	
	15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3	
	16	도우미 등 학교홍보와 관련된 봉사활동(1일)	3	

징계 기준

구분	항	내용	학생징계					비고
			훈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언행)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3	인권을 크게 어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특히 사제 간에 패륜적 행위를 한 학생)		●	●	●	●	
	4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	●	●				
	5	동일 행동으로 지속적 지도에도 반복되는 경우		●	●			
준법	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2	수업준비, 청소, 도우미활동, 기타 의무이행을 불응한 학생	●	●				
	3	학생선도에 불응한 학생	●	●				
	4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5	형법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	●	●	
	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학생		●	●			
	7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로 교육활동 방해	●	●				
	8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약물	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2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	
	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수업 및 근태	1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	●			
	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생		●	●		●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 또는 방조한 학생		●				
	4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5	사고지각, 조퇴, 결과가 상습적인 학생	●	●				
기타	1	선도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기준에 준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당해 연도 1차선도 후 재선도 대상학생은 가중 처벌하여 선도한다.						
	3	전 학년도에 선도 처분이 있을 시 가중 처벌한다.						
	4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학교폭력관련 처리 기준표

구분	항	행 위 내 용	훈육 훈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 교 폭 력	1	싸움이나 타인을 구타한 학생	●	●	●		
	2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학생		●	●	●	●
	3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상습적으로 소지한 학생		●	●	●	●
	4	흉기를 폭행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학생				●	●
	5	심한 욕설을 남용하거나 폭행을 한 학생	●	●	●	●	
	6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가담한 학생			●	●	●
	7	학교내 폭력단체를 조직 및 활동한 학생			●	●	●
	8	이유 없이 상. 하급생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	●	●	●
	9	상대방이 불안,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 행위를 한 학생	●	●	●	●	
	10	공갈행위, 폭력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		●	●	●	
	11	상해행위(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		●	●	●	●
	12	강금, 약취, 유인행위(금품 절취)		●	●	●	●
	13	부녀자, 학생을 희롱한 행위		●	●	●	●
	14	성추행, 성폭행 행위		●	●	●	●
	15	상대방에게 심하게 경멸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	●	●	●	
	16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	●	●	
	17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따돌림)		●	●	●	●
	18	학교폭력에 준하는 기타 유사행위	●	●	●	●	●
	19	불량배와 공모하여 구타, 치상케 하여 위법 조치되어 실형을 신고 받은 학생				●	●

※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함.

